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의 내용과 방향

김 영 식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1. 배경과 의미

지난 8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안’은 5·31 교육개혁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대학원 교육체제를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교육부가 대학원 교육제도의 대대적 개선에 나선 것은 다양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급 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 대학원이 현행 제도로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원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교육이념이나 체제면에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됨으

로써 다양한 진학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론 질적 수월성 추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대학원 제도로는 정보화·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현행 대학원 교육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제정비를 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개선안의 주요 내용

1) 대학원 유형의 다양화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의 유형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 분류할 수 있

〈표 1〉 대학원의 유형 및 특성

구 분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교육목적	학문중심의 과정운영을 통해 학자를 양성	특정직업과 연계된 분야중심의 과정운영을 통해 전문직 인력 양성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을 위한 과정운영을 통해 계속교육 기능 수행
수업방식	○주간	○주간원칙	○야간, 계절제
설치과정	○석·박사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설치수	○1개 대학 1개 설치	○1개 대학 1개 이상 설치 가능	○1개 대학 1개 이상 설치 가능
교직원·시설	○학사과정과 연계 가능	○전임교직원, 시설 등 확보 의무화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과 연계 가능

다. 일반대학원은 거의 모든 학문영역을 포괄하는 데다 학문을 계속할 사람과 전문직 종사자 양성기능이 복합돼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대학원의 경우, 교수요원과 개업의 희망자가 혼재해 있고, 법과대학 대학원의 경우에도 법대 교수 희망자와 법조계로 진출할 희망자가 섞여 있는 상태여서 교육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을 학문중심과정의 일반대학원, 특정직업과 연계된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는 전문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 기능을 담당할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함으로써 대학원 유형에 따른 특성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본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대학원 유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 단설대학원 제도의 도입

세계화·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통상의 교·지역연구·디자인 분야 등의 전문요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대학의 대학원 운영과는 구분되는 학부 없는 별도의 단설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이미 산업체나

산업체 부설연구소, 종합병원 등의 특수 전문기관에서 단설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학사학위과정이 없는 대학원으로 오사카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연구과, 공공경제학 등 13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단설대학원 형태의 대학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설대학원의 설립기준은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그 운영 실태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은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단설대학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

- 형태 : 전문대학원
- 설치 운영기관 : 산업체, 산업체부설연구소, 종합병원 등의 특수 전문기관
- 수여학위 : 전문 석사학위
- 사례
 - Arthur D. Little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 전문 경영자문연구소로 10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72년에 학위수여기관으로 인정
- 운영주체 : Arthur D. Little Company
- 학위수여 : 회사의 경영자가 경영과학 석사학위 수여
- 이수학점 : 11개월 동안 50학점 이수(최소 700시간 강의)
- 개설분야 : 국제경영, 경제학, 산업발달 또는 에너지경영 분야
- 수업형태 : 정시제 수업
- 학생수 : 40여 명(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극동지역 학생)

●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stitute of Health Profession :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건강전문연구소

- 1960~198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설립
- 설립목적 : 건강치료의 진보적인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최신 훈련 교육과정 발달
- 개설분야 : 영양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언어병리학 등
- 교수구성 : 11명의 전일제 교수, 30여 명의 정시제 교수

● The Wang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 왕 연구소 부설 대학원과정

- 설립목적 : 고도의 숙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및 경영자 양성
- 운영방식 : 모기업과 다른 첨단 업종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
- 학위인정 : 1982년부터 인정
- 수업기간 : 12개월

※ 이상 자료출처 : 대학원 제도의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연구(교육부 정책과제) (92. 11월, 연구책임자 : 임천순,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현 세종대 교수)

(일본)

□ 형태 : 대학내 단설대학원 형태(학사과정이 없는 대학원)

□ 사례

○ 오사카 대학원의 경제학연구과, 공공경제학 등

- 13개 대학 24개의 연구과와 90개 전공

○ 동경공대 대학원의 종합 이공학연구과정 (16개 대학 24개 연구과)

※ 자료출처 :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 시행방안 연구(교육부 정책과제)

(93. 8월, 연구책임자 : 김신복, 서울대 교수)

3) 석·박사학위의 학술학위와 전문학위 구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한 목적은 학문중심과 현장중심으로 나눠 학위취득의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학위를 다양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술학위를, 특정직업과 연계된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전문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을 수여하고,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의 수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위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상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교수진과 다양한 학생을 수용하여 통합화와 세분화, 선택성이 보장되어 순수한 학문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한편,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학문과 전문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의 사례

- 미국 : 학문석사 이외에 140여 종의 전문 석사학위, 학문박사 이외에 40여 종의 전문박사학위
- 영국 : 학문석사 이외에 50여 종의 전문 석사학위, 학문박사 이외에 20여 종의 전문박사학위
- 독일 : 학문박사 이외에 27여 종의 전문 박사학위

4) 석·박사학위 과정의 통합

현행 대학원 제도는 석·박사학위 과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박사학위 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석·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연구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던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최소 수업연한을 석사학위 과정 2년, 박사학위 과정 4년(석사학위 과정 이수기간 포함) 이상으로 하고, 대학 졸업후 박사학위 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후 2년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과정 이수를 희망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과정 이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으로 끝날 수도 있다.

5)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학사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이수학점, 시험, 논문 등 학사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과감하게 위임하여 최대한 대학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예상되는 문제점

이번 개선안은 대학원 교육의 다양화·세분화

를 통해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 측면과 고학력 분위기를 촉발하고 학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자율화 이후 대학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마당에 전문대학원이나 단설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질보다는 양의 팽창을 바라는 대학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의료인·법조인 등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은 대학마다 다투어 설립코자 하는 인기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단설전문대학원을 세우도록 하고, 일반대학의 경우에도 별도의 전임교직원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4. 맺는 말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대학원 교육의 충실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 개선이라 해도 본래 목적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 개혁의 주체와 역량은 역시 대학에 있다. 실천의 중심은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교수들인 바, 여러 교수들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혁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김영식/부산대학교 법대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행정학의 기본문제』가 있다.